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교통 민원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, 이첩된 사항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같음한다.

1. 사업용 자동차(버스, 택시 등)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위반행위
2. 비사업용 자동차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위반행위
3. 그 밖에 교통 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.

1. 직능단체,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2.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민

**제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

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**제5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.

③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주차관리과 주차지도팀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 민원신고 심의의 각 안전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비밀준수)**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0조(심의 결과 처리)**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회의록 작성)**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참석위원
3. 심의사항 및 그 결과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